

<전문기업확인 제도 안내>

➤ 전문기업확인 제도는

「소재·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200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써, 소재·부품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재·부품 및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 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추천·확인하는 제도입니다

➤ 전문기업 확인 혜택

구분	지원내용 및 우대사항	관련기관
인력지원	산업기능요원제도(병역지정업체) 신청 시 가점	중소기업청
사업화 및 경영지원	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(지방소재 기업)	한국은행 (각 지역본부)
기술지원 및 기술개발	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청 시 가점	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
	신뢰성기술확산사업 신청 시 가점	한국산업기술진흥원
	글로벌 동반성장 R&BD사업 신청 시 가점	
	감성 소재부품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	한국생산기술연구원
	소재부품중소기업 성장통 극복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	
기타	소재부품기술상 우대	한국산업기술진흥원

➤ 전문기업확인을 받으려면

소재·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.

- 생산 제품이 소재·부품 범위 또는 그 생산설비에 해당하는 업종
- 기업의 총매출액 중 소재·부품 또는 생산설비의 매출액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
-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거나, 상로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소재·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총매출액 중장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의 100분의 650 미만인 기업

(소재·부품 범위) 상품의 제조에 소요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의 제조

-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
-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소재·부품으로서 기술파급 효과 또는 부가가치창출 효과가 큰 것
-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간 여관 효과가 큰 것

➤ 전문기업 확인절차 및 유효기간 등 기타 내용은

(주)CE경영컨설팅 ☎032-328-9340 홈페이지 : <http://ceconsulting.co.kr/>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